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. 18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. 18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가. 개정이유

-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
-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
-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나. 주요골자

-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(안 제23조제2항)
-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)
-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

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(안 별표 3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75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개정이유

-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
-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
-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주요골자

-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(안 제23조제2항)
-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)

○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(안 별표 3)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호 중 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”를 “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 중 “배 생리기마다 1일”을 “배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”로 하며,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, 동종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7항(종전 제6항)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재직기간 중에”로 하고, 동조제9항(종전 제8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-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
-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제24조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7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
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출 산	배우자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5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5. <u>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 6.~8. (생략)	제3제22조(공가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</u> 6.~8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특별휴가) ①(생략) ② <u>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	제23조(특별휴가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u>

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<신설>

④·⑤(생략)

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⑦(생략)

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⑨(생략)

제2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.....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.....

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

⑤·⑥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⑦.....
.....재직기간 중에.....
.....

⑧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.....정년퇴직이나.....
.....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.....

⑩(현행 제9항과 같음)

제2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
.....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.....